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 .

제안자 : 행정안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제안자	제안일	심사경과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정검식의원 (2206146)	2024.12.03.	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5.02.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○ 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(25.07.09) 상정/축조심사 ○ 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(26.08.26.) 상정/의결(대안반영 폐기)
	정춘생의원 (2209856)	2025.04.16.	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5.02.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○ 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(25.07.09) 상정/축조심사 ○ 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(26.08.26.) 상정/의결(대안반영 폐기)
	양부남의원 (2212158)	2025.08.13.	○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(26.03.10) ○ 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(26.08.26.) 상정/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38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6.08.26.)는 위
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

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제43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09.01.)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진압, 구급·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,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.6%에 달하여(2023년 기준)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,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,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년)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은 65세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5조(정년) ----- ----- . 다만, 시·도의 <u>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</u> <u>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</u> <u>다.</u>